

한국체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정 2004. 5. 7 (규칙 제432호)

개정 2012. 9. 20 (규칙 제60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함과 아울러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저작, 실용신안, 의장 등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발명을 말한다.
 - 가. 본 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본 대학교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 나.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 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3. “자유발명”이라고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신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전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전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의장법상의 의장,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의장”,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등으로, 그리고 “발명자”는 “창작자”로 본다.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4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 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허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 한다.
- ② 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자기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직무발명의 신고)

- ①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발명자는 직무발명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3호서식)
 3.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4.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내역

제6조 (자유발명의 신고)

-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본 대학교 또는 그 산하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승계결정의 통지)

-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해서 그 특허출원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② 산학협력단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본다.
-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즉시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발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해서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특허출원)

- ① 법인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지원을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후문에 규정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 또는 그 산하기관과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고 동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은 당해 제3자가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④ 산학협력단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자유발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당해 발명의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⑤ 외국에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출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9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본 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해외출원 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6.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 (의결정족수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실시료의 분배

제13조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6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 ③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의 분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발명자보유특허 이전의 실시료 분배)

- ①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법인이 이전 받은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국내특허의 경우 5십만원
 2. 해외특허의 경우 2백만원
 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의 경우 1백만원
- ②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이전 받아 이를 실시하거나 기타 기술이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8천4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15조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한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재단이 보유를 포기한 기술을 실시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9천2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제16조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규정이 있는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① 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실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분을 제외하고 분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3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제17조 (특허권 없는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특허권 없는 기술을 이전 받아 이를 실시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8천2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18조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는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에 5대 5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한다.

제19조 (자문료)

- ①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계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10분의 1을 징수한다.
- ② 자문결과에 따라 기술 및 특허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제14조 제2항에 의해 분배할 수 있다.

제20조 (상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상표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실시료를 사용료로 본다.

제21조 (지급기간)

- ① 실시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지체없이 법인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 (발명자의 의무)

-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한국체육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유지의무)

한국체육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정관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03호, 2012.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의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하고, 제31조의 “한국체육대학교지적재산권규정”을 “한국체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으로 한다.

②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제3호, 제2절 절제목, 제8조 조제목 및 본문, 제8조제2호 내지 제6호, 제8조제8호, 제10조 조제목,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5호의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연구과제 명 :

계약 당사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하 “을”이라 한다)

연구 책임자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이하 “연구책임자”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연구비 금액 및 지급조건) ①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 가운데 직접연구비는 금 원정(₩)으로 한다.

② 본 연구에 소요되는 간접연구경비는 직접연구비의 ※() %로 한다.

③ 연구비 총액은 금. 원정(₩)으로서, 전액 “갑”이 부담하며 “갑”은 아래와 같이 2회로 나누어서 “을”에게 지급한다.

1차 경비(50%)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2차 경비(50%) : 금 원정(₩))
(년 월 일)

제4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3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갑”, “을”,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갑”이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8조(연구결과 창작된 발명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결과로 창작된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는 “갑”과 “을”이 공유(또는 “을”의 단독소유로)한다.

② 제1항 규정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설정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실시료 등 수익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을”에 귀속된다.

제10조(연구용역 결과물 저작권의 사용허가 및 권리양도) “갑”은 제9조의 저작권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을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호간 합의에 따라 “을”에 사용료나 권리양도금을 지급해야 하나, 우리나라 스포츠나 사회 발전 등 공익을 위해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명칭 사용) “갑”은 우리나라 스포츠나 사회 발전 등 공익을 위해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승인 없이 “을”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을” 또는 “한국체육대학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

소로부터 “을”과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을” 또는 연구책임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을”과 연구책임자가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갑”이 연구비 지급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구보고서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연구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첨 부 :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인)
주 소 :

“을” :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